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28조제2항 관련)

어업	지역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1. 해조류양식업, 외해양식업	전국	「어선법」에 따른 어선
2.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 동양식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 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 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가. 양식장형망선(형망을 이 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나.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 업이 허가된 어선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 도, 제주특별자치도	가. 양식장형망선 나. 자원관리채취선(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다.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 업이 허가된 어선